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0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황명선 · 민병덕 · 송옥주  
박정현 · 김한규 · 박 정  
김현정 · 전재수 · 이개호  
최혁진 · 박용갑 · 정동영  
추미애 · 차규근 · 윤준병  
백선희 · 정진욱 · 황정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자치감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자치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에는 2명은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자치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⑨ 그 밖에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89조의2(자치감사위원회 설치)</u></p> <p><u>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u></p> <p><u>③ 자치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u></p> <p><u>④ 위원장은 자치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⑤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에는 2명은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자치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

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⑨ 그 밖에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